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

제3항 단서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

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제” 로 하며,

제4항 중 “새로이” 를 “새로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도정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자문·협의를 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<u>기타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 -----.</p>
<p>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<u>새로이</u>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④ ----- <u>새로</u> ----- -----.</p>